

B.E. 2522(1979) 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7호(B.E. 2525 (1982))¹⁾

B.E. 2522(1979) 식품법 제5조 및 제31조에 의해 공중보건부장관(Minister of Public Health)은 본 공중보건부령(Ministerial Regulation, 이하 본 “보건부령”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다.

1항. 아래의 내용을 B.E. 2522(1979) 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4호의 1항.Bis로 추가한다.

"1항.Bis. 판매 목적으로 식품공장 설립 허가를 받고 이미 레시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 통제식품의 수출을 위해 바이어가 요구하는 새로운 라벨(label)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레시피 등록증에 기재된 기존의 라벨에 추가하여 새로운 라벨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라벨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7/1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서식 Orr.17/1에서 지정한 서류들(각각 4부씩)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항. B.E. 2522(1979) 식품법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4호 2항은 폐지되며,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된다.

“2항. 1항에 따른 레시피 등록증은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8을 사용하여야 한다.

1항.Bis에 따른 레시피 등록증은 본 보건부령에 첨부된 서식 Orr.18/1을 사용하여야 한다.”

B.E. 2525(1982)년 2월 19일 제정
썸 프링푸양깨우
공중보건부 장관

1) 1979년 3월 23일 관보 제99권/제41편/39쪽
(Royal Gazette: Volume 99/Part 41/Page 39/23 March 2522)

[첨부]

1. 식품레시피 등록 신청서
 2. 식품레시피 등록증
- (더 자세한 내용은 시행 규칙 참조)

주석: 판매 목적으로 식품공장 설립 허가를 받고 이미 식품 레시피가 등록된 구체적 통제식품의 수출을 위해 수출 바이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등록 라벨에 추가하여 새로운 라벨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장려하고 원활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중보건부는 추가적인 식품 견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 없이 새로운 식품 레시피의 등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런 목적의 식품 레시피 등록 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게 되었다. 또한 B.E.2522(1979) 식품법 제31조는 식품 레시피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은 보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롬нат(Phromnat)
2019년 2월 18일 수정